

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용 인 시 의 회 의 장

2022년 1월 6일

용인시의회 규칙 제35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

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국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주 소	□□□-□□□	
	⑧전화번호(주택)		⑨근속기간	년 월	⑩정년일	
	⑪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정년	(세, 년)	
	⑭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 담당관	(인)	연금 담당관	(인) 감사 담당관 (인)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불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통 2. 명예퇴직원 1통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통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
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
납하여야 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
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 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통.								
<table><tr><td>확인</td><td>인사운영팀장</td><td>(인)</td></tr></table>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확인	인사운영팀장	(인)
확인	인사운영팀장	(인)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